

#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(임춘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2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임춘대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  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  
심미경, 왕정순, 유만희,  
유정희, 윤기섭, 윤종복,  
이민옥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 
최민규, 허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 4 제1항 제5호는 서울특별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‘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’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출연 동의 절차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이루어지므로, 해당 단계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내용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복 검토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.
- 또한, 동의안 제출 시점과 예산안 심의 시점의 차이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출연 규모가 변동될 경우, 사전 동의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
- 이에 출연 동의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·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에 집중하고,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 · 출연 동의안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삭제함 (제22조의4 제1항 제5호 삭제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 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 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.	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/u>	<u>&lt;삭 제&gt;</u>
6. ~ 8. (생 략)	5. ~ 7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부절차에 관한 사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해당 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'소요예산 및 산출근거'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삭제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절차 개정사안으로 판단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해당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